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 연도	2025.01.01 ~ 2025.12.31	<b>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</b>	법인명	비트맥스 주식회사
			사업자등록번호	114-86-83769

구분	①요건	②검토내용	③적합 여부	④적정 여부																		
중 기 업	⑩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⑪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⑫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※ ②, ③은 2025.0.0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	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경비율코드</th> <th>사업수입금액</th> </tr> <tr> <td>업태별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01) (서비스업)업</td> <td>(04) 722000</td> <td>(07) 11,857,536,986</td> </tr> <tr> <td>(02) ( )업</td> <td>(05)</td> <td>(08)</td> </tr> <tr> <td>(03) 그밖의 사업</td> <td>(06)</td> <td>(09)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</td> <td>11,857,536,986</td> </tr> </table>	구분	기준경비율코드	사업수입금액	업태별			(01) (서비스업)업	(04) 722000	(07) 11,857,536,986	(02) ( )업	(05)	(08)	(03) 그밖의 사업	(06)	(09)	계		11,857,536,986	(17) <b>적합 (Y)</b>	(26)
		구분	기준경비율코드	사업수입금액																		
		업태별																				
		(01) (서비스업)업	(04) 722000	(07) 11,857,536,986																		
(02) ( )업	(05)	(08)																				
(03) 그밖의 사업	(06)	(09)																				
계		11,857,536,986																				
⑬ 아래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⑭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('평균 매출액등'은 '매출액'으로 봄) 이내일 것 ⑮ 졸업제도 -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	가. 매출액 - 당 회사 (10) ( 118.6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 (11) ( 800 억원) 이하 나. 자산총액 (12) ( 1,065.9 억원)	(18) <b>적합 (Y)</b>	<b>적 (Y)</b>																			
⑯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원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어야 할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(⑩의① 기준) 이내일 것	(19) <b>적합 (Y)</b>	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		
⑰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)]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 사유발생 연도 (13) (            )년	(20) <b>적합 (Y)</b>	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		
⑱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⑮)을 충족하는지 여부	(21) <b>적합 (Y)</b> (N)	(27)																			
⑲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,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 ('평균매출액등'은 '매출액'으로 봄) 이내일 것	○ 매출액 - 당 회사 (14) ( 118.6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 (15) ( 50.0 억원) 이하	(22) <b>적합 (Y)</b> (N)	<b>적 (Y)</b>																			
소 기 업			(21) <b>적합 (Y)</b> (N)	<b>부 (N)</b>																		

구분	①요건	②검토내용	③적합여부	④적정여부							
중 견 기 업	㉞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 ㉞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(23) (Y) (N)	(28)							
	㉞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</li> <li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</li> </ul>	(24) (Y) (N)	적 (Y)							
	㉞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[구 조세특례제한법]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 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]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기목2)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: 3천억원 미만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직전 3년</td> <td>직전 2년</td> <td>직전 1년</td> <td>평균</td> </tr> <tr> <td>28.6 억원</td> <td>16.1 억원</td> <td>3.6 억원</td> <td>16.1 억원</td> </tr> </table>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28.6 억원	16.1 억원	3.6 억원	16.1 억원	(25) (Y) (N)
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							
28.6 억원	16.1 억원	3.6 억원	16.1 억원								

220-88-56765

동현회계법인 장선택

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2

4층 (논현동, 한일빌딩)

서비스 공인회계사

